

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(소병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70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21.

발 의 자 : 소병훈 · 박지원 · 장종태
이춘석 · 조계원 · 박상혁
박 정 · 박용갑 · 윤준병
강준현 · 서영석 · 안태준
안호영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으로 하여금 국민의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의식 등 구강건강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되,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에 대하여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는 10년에 한번씩 조사(2005년, 2015년 및 2025년)하고 있어 조사실시 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음.

또한, 2025년도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세 이상 정신장애인의 97.4%가 영구치 충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구강건강관리가 취약한 장애인을 위한 구강보건 대책 마련이 시급함.

이에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 조사를 따로 구분하여 조사하되 그 실시 주기를 일반 국민과 같이 3년으로 단축하고, 구강건강관리가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년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9

조 제1항 및 제15조 제4항).

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구강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후단 중 “장애인의 구강건강상태에 대하여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할 수 있다”를 “장애인의 구강건강상태를 따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의 구강건강상태 조사 결과에 포함하여 공표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1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강건강관리가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구강보건 사업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구강건강상태조사 및 결과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구강건강상태를 조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9조(구강건강실태조사) ①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의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의식 등 구강건강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<u>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에 대하여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할 수 있다.</u>	제9조(구강건강실태조사) ① 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. -----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를 따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의 구강건강실태 조사 결과에 포함하여 공표하여야 한다.</u>
②·③ (생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15조(노인·장애인 구강보건사업 등) ① ~ ③ (생략) <u><신설></u>	제15조(노인·장애인 구강보건사업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강건강관리가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.</u>